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9. 12 선고 2024가합502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한지영

피고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아람

변론 종결2024. 8. 22.

판결 선고2024. 9. 12.

주 문

- 피고와 유한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4. 21. 성립된 매매예약 및 2023. 1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 피고는 유한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4. 21. 접수 제113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2. 26. 접수 제60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증계약의 체결

- 1) 유한회사 C(이하 '채무자회사'라 한다)은 2021. 7. 15. D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 일반자금 7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22. 4. 29. 채무자회사의 D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원금 586,500,000원, 보증기한 2022. 7. 13.까지로 정하여 보증하였다.
- 2) 채무자회사는 2022. 4. 29. E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22. 4. 29. 채무자회사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원금 380,000,000원, 보증기한 2023. 4. 28.까지로 정하여 보증하였다[이하 원고와 채무자회사 사이의 1), 2)항 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채무자회사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 1) 채무자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4. 21. 가등기권자 피고, 등기원인 2023. 4. 2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으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2. 2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23. 12. 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신용보증사고 및 원고의 대위변제

- 1) 채무자회사는 2023. 5. 14.까지 D은행에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였으나, 그 후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 D은행은 2023. 6. 30. 원고에게 사고발생일 2023. 6. 28., 사고종류 기한이익상실인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3. 8. 25.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써 D은행에 595,838,20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채무자회사는 2023. 5. 2.까지 E은행에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였으나, 그 후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 E은행은 2023. 6. 22. 원고에게 사고발생일 2023. 6. 15., 사고종류 신용관리정보 등록된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3. 6. 30.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써 E은행에 383,974,1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대위변제한 위 돈 중 10,478,125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자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969,334,254원(= D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595,838,204원 + E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383,974,175원 - 회수금 10,478,125원)의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예약 성립일 및 이 사건 가등기 경로일 후인 2023. 6. 30. 및 2023. 8. 25. 비로소 발생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채무자회사는 2022. 4. 29.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이 사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채무자회사는 2023. 5. 14. 후부터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3. 6. 30. 및 2023. 8. 25.에 이르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든 증거, 갑 제9,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무자회사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성립 및 이 사건 가등기의 경로 후 약 두 달 만인 2023. 6. 9.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이 시점에 채무자회사가 명시한 부채가 2022. 12. 31. 기준 7,248,193,652원에 이르는 점, ②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채무자회사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 사실상 유일한 물적 자산이므로, 위 자산의 매각을 두고 자금 유통을 통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채무자회사는 2023. 4.경 부채로 인하여 채무자회사의 채권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소재한 공장 정문을 점거하는 등으로 변제 요청을 받고 있었던 점, ④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사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⑤ 피고가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점(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⑥ 나아가 채무자회사의 대표자인 이사 F는 2021. 1. 12.부터 2023. 4. 19.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였으며, 2023. 4. 19.부터 2023. 5. 12.까지 피고의 사내이사였으므로, 그 인적 구성을 보더라도 채무자회사와 피고가 채무자회사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배제하고자 하는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회사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 범위 및 방법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목적물이 부동산이고 사해행위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인 경우 그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채무자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성민

판사김은지

판사이명은

별지